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 위원장 한정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  
습니다.

○ 전문위원 김영만 전문위원 김영  
만입니다.

1992년 2월 10일 충청북도 교육감으  
로부터 제출되어 2월 11일 회부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 교육감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2년 2월 10일

○ 회부일자 : 1992년 2월 11일

3. 개정사유

현재 교육위원에게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  
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지방  
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개정(법률 제4473호)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  
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골자

가. 교육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  
8조 제2항, 제3항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법 제32조를 준용하도록 함에 따

라 근거법령 수정(조례 제1조)

나.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와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조례 제4조)

## 5. 검토의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면밀히 검토한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4473)됨에 따라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는 물론 교육위원이 교육위원회의 회의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24조(지방자치의 준용)에 따라 동법 제32조의 개정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